

1. 개정이유

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,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(법률 제19746호, 2023. 10.24. 공포, 2024.4.25. 시행)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(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)
- 나. 조정신청서 접수처를 농관원장으로 하고, 조정안 작성기간 연장, 조정종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(안 제24조의6)
- 다.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의 판매업자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만 모집단별 판매정보 등을 기록·제공하도록 추가(안 별표 3의8, 3의9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“제2항 후단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5항”을 “법 제14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4조제2항”을 “법 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3제2항 중 “법 제14조제5항”을 “법 제14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6제1항 중 “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”를 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”를 “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회부 받은”으로, “한다)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”을 “한다)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3조의7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4조의6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“제11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외에”를 “이외에”로 한다.

별표 3의5 제3호다목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8에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, 품목 등록번호, 바코드(특별관리 대상으로 한정)

별표 3의9에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, 품목 등록번호, 바코드(특별관리 대상으로 한정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공급하는 판매업자에 관한 특례) 별표 3의8 및 3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는 제24조의4 제4항에 따른 판매·구매정보를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9조의2(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)	제19조의2(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)	제19조의2(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)		
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<u>제2항 후단</u> 에 따라 농약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<u>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① ----- ----- <u>법 제14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② 농약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<u>법 제14조제5항</u> 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법 제14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<u>법 제14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<u>법 제14조제2항</u> 에 따라 회수한 농약: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	2. <u>법 제14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
제19조의3(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) ① (생 략)	제19조의3(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) ① (현행과 같			

② 농약등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4조의6(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)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(이하 “조정신청서”라 한다)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인지 여부 등을 검토

음)

② -----

----- 법 제14조제6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6(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) ① -----

----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-----

-----.

②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회부받은 ----- 한다)의 -----

하여 접수하고,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조정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

⑧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으며, 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23조의7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다.

1.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

2.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
경우

3.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
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
행이 불가능한 경우

4.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
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
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
를 제기하는 등 분쟁조정 절
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
우

⑨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
받은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
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
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
으로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해
당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
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
것으로 본다.

<삭 제>

⑩ 제9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
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
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<삭 제>

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
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

<삭 제>

<u>서를 작성하고,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 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.</u> ⑫ 제1항부터 <u>제11항</u>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<u>외에</u>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⑫ ----- <u>제5항</u>----- ----- <u>이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